

수지초등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

제정 2026.03.26.

제1조 【목적】 이 규정은 학교체육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 【적용 범위】 이 규정은 수지초등학교 스포츠클럽(팀)의 학생, 지도교사 및 스포츠클럽 업무담당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 【기능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체육 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
2.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
3.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
4.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
5.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
6. 유아 및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
7. 학교 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
8.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 【조직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직원(체육/안전/동아리활동/계발활동담당자등)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해당 업무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에 한한다.

제5조 【운영】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2. 위원회는 연 1회 의무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3.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.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5.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